
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- 271호
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“2026년 중소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16일

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

※ 본 공고는 「2026년 중소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-656호(25. 12. 29.), 제2026-140호(26.2.27.)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한 공고입니다.

## 2026년 중소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

< '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 규모(단위 : 억원) >

구 분	자금 개요	공급 규모	쪽수
① 일반경영안정자금	일반(업력 무관)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	12,200	6쪽
② 특별경영안정자금	위기·취약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	16,700	7쪽
○ 긴급경영안정자금	- 재해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	1,000	8쪽
	- 매출감소 등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	1,200	8쪽
○ 신용취약자금	- 중·저신용(NCB 839점 이하) 소상공인 전용 자금	7,000	10쪽
○ 대환대출	- 금융권의 7% 이상 고금리 대출을 4.5%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중·저신용(NCB 919점 이하) 이자부담 완화	3,000	11쪽
○ 재도전특별자금	- 재창업,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등을 지원하는 자금	1,000	13쪽
○ 장애인기업지원자금	- 장애인기업 전용 자금	500	15쪽
○ 청년고용연계자금	- 청년 대표 또는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	3,000	16쪽
③ 성장기반자금	성장 유망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	7,920	17쪽
○ 소공인특화자금	- 소공인 전용 자금	2,000	18쪽
○ 혁신성장촉진자금	- 수출, 매출신장, 소상공인 졸업 후보, 스마트공장 또는 스마트기술 도입 등 유망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	4,800	20쪽
○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	- 민간 투자자의 투자·펀딩을 받은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	360	22쪽
○ 상생성장지원자금	- 온라인 플랫폼사의 선별육성과 정책자금 지원을 결합하여 온라인 진출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	760	23쪽
<b>합 계</b>		<b>36,820</b>	-

# 1 공통사항

## □ 용자대상

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  - \*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, 주된 사업의 업종이 용자제외 대상 업종(별표1(24쪽)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자대상에서 제외

## □ 용자한도 및 금리

- **(용자한도)**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운용(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)
  - \*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용자한도와 별도로 운용
- **(대출금리)** 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별 변동금리)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,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
  - \*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
  -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(일부자금 제외),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
  -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'소진공'이라 한다) 홈페이지(www.semas.or.kr)에 공지
  - 유형별 0.1%~0.3%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, 최대 0.8%p까지 금리우대 지원('26년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)

### <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>

유형	구분	우대금리
정책 우대	-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, 제로페이 가맹점, 디지털 온누리상품권(카드형·모바일형) 가맹점	△0.1%p
정책 배려	-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우수기업	△0.1%p
사회안전망	- 지역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	△0.1%p
성실상환	-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(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 이력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경우)	△0.3%p
지역 격차해소	-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(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)	△0.2%p

\*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

\*\* 고정금리(장애인기업지원자금,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재해자금, 대환대출 등) 상품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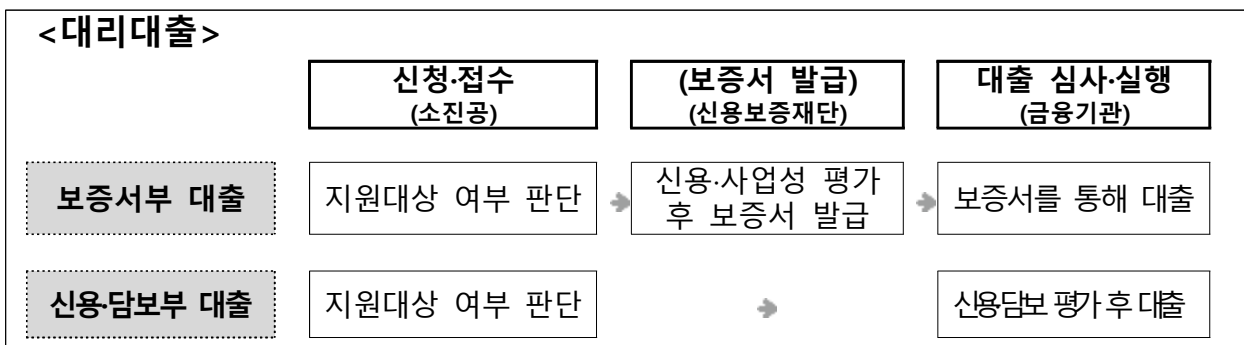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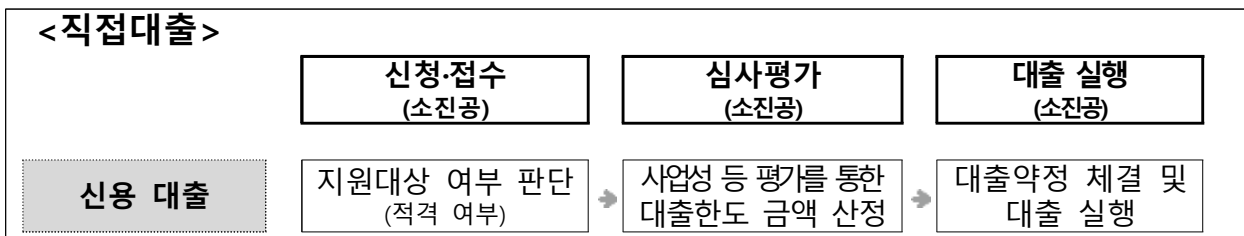
□ **융자 절차**

○ **융자 신청·접수**

- (온라인)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<https://ols.semas.or.kr>)에서 접수
- (오프라인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(전국 78곳)에 방문하여 접수

○ **융자 결정 절차**

- (직접대출) 소진공에서 기술성, 성장잠재력, 경영능력,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
- (대리대출)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, 금융기관(신용보증기관)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



○ **융자 실행 절차**

-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

○ **사후관리**

-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

\*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

## □ 용자제한 소상공인

- ①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. 단, 압류·매각의 유예 등\*을 받은 소상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용자대상에 포함

\* 「국세징수법」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·매각의 유예(舊 체납처분 유예)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,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

-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“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 따라 “신용도판단정보”, “공공정보”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

-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용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

-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

- ⑤ 휴·폐업중인 소상공인. 단,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용자대상에 포함

- ⑥ 정책자금 용자제외업종(별표1(24쪽))을 영위하는 소상공인

### < 용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>

-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(도박·사치·향락, 건강유해 등)
-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(법무·세무 등 전문서비스, 금융 및 보험업 등)

- ⑦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\*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,

\*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지원받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, 시설자금 또는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더라도 1회 추가 지원 가능

※ '26년 특별경영안정자금 : 청년고용연계자금, 신용취약소상공인지금, 재도전특별자금, 긴급경영안정자금, 장애인기업지원자금, 대환대출

※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: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소상공인

- ⑧ 동일 연도 내에 동일한 자금을 신청하여 부결·승인(승인 후 전액 포기 포함)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(※ 직접대출 한정)

※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(대출제한대상 등)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진공의 신청안내자료 등을 따릅니다.

□ 접수 시기

- 대리대출은 1월 5일, 직접대출은 1월 12일 접수 개시

□ 접수처

- (온라인)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(<https://ols.semas.or.kr>)에서 접수
- (오프라인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(전국 78곳, 별표2(26쪽)) 방문하여 접수

□ 문의처

- 중소기업통합콜센터(1357) 또는 소상공인통합콜센터(1533-0100)에서 상담 가능

구분	주요 역할
중소기업통합콜센터(☎1357)	중소기업·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 안내
소상공인통합콜센터(☎1533-0100) → 내선번호 1번	맞춤형 정책자금 · 채무조정제도 · 재기지원 상담

※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(전국 78곳, 별표2(26쪽))

※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연락처

- 지역신용보증재단(1588-7365)(전국 17곳 연락처, 별표3(30쪽))
- 신용보증기금(1588-6565)
- 기술보증기금(1544-1120)

## 2 사업별 정책자금 용자계획

### 1 일반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

#### 사업목적

-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

#### 용자규모 : 12,200억원 내외

#### 신청대상

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의 소상공인(업력 무관)

\* 용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(표준산업분류 68)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68112)은 '착한 임대인'에 한해 허용

#### 용자범위 및 형태

-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
#### 용자조건

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
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- 대출한도 : 연간 7천만원
- 용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

## 2

## 특별경영안정자금

대리대출

직접대출

### □ 사업목적

- 경기침체지역, 재난 피해, 일시적 경영애로, 금융소외 계층(장애인, 저신용자 등),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

### □ 용자규모 : 16,700억원 내외

### □ 세부자금별 용자조건

자금명	지원대상	대출한도	대출금리	대출기간 (거치기간)
긴급경영 안정자금	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	1억원	연 2.0%	5년(2년)
	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	7천만원	기준금리	5년(2년)
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	중·저신용 소상공인	3천만원	기준+1.6%p	5년(2년)
대환대출	중·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·비은행권의 7%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의 만기연장 지원이 제한되는 대출	5천만원	연 4.5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비거치형 10년(비거치)</li> <li>• 거치형 10년(2년)</li> </ul>
재도전특별자금	(일반형) 재창업 준비단계, 재창업 초기단계, 채무조정 소상공인	7천만원	기준+1.6%p	5년(2년)
	(희망형)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선정기업	1억원	기준+0.6%p	5년(2년)
	(도약형) 매출증가, 고용유지 등 성장성이 인정되는 성실상환 재창업 소상공인	2억원	기준+0.4%p	5년(2년)
장애인기업 지원자금	장애인기업	1억원	연 2.0%	7년(2년)
청년고용연계자금	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	7천만원	기준금리	5년(2년)

### □ 사업목적

- 자연재해·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

### □ 용자규모 : 2,200억원 내외

### □ 신청대상

- (재해) 집중호우, 태풍, 폭설,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, 지자체에서 “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
- (일시적 경영애로)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
  - (매출감소 15% 확인) 직전 매출과 직전전 매출(연도,반기,분기,월별) 비교를 통해 매출 15%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
  - (매출감소 확인 예외) ①~⑦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

- ①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
-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
- ③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
- ④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
- ⑤ 홉플러스 피해 소상공인
- ⑥ 12·29여객기참사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
-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

### □ 용자범위

- 자연재해·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·간접피해 복구비용(재해 소상공인)
-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(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)

## □ 용자조건

### ① 재해 소상공인

- 대출금리(고정금리) : 연 2.0%
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- 대출한도 : 1억원\*

\*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

- 용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

\* 단,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징수특례,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

### ②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

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
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- 대출한도 : 7천만원\*

\*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

- 용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

\* 단,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인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 또는 홈플러스 피해 유형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

□ 사업목적

-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(중·저신용)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

□ 용자규모 : 7,000억원 내외

□ 신청대상

- 소상공인 지식배움터(<http://edu.sbiz.or.kr>)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·저신용(NCB 839점 이하) 소상공인

\*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

□ 용자범위

-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
□ 용자조건

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1.6%p
  - 대출 후 1년 경과 시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했거나, 840점 이상으로 회복한 경우 대출금리를 0.5%p 낮춰주는 '금리인하제도' 신청 가능

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
- 대출한도 : 3천만원\*

\*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('23년 소상공인·전통시장자금, '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, '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, '26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) 대출잔액 합산

- 용자방식 :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

## □ 사업목적

- 중·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

## □ 용자규모 : 3,000억원 내외

## □ 신청대상 : 중·저신용(NCB 919점 이하) 소상공인

-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신용평점 미적용

-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 이력이 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소상공인
-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'24년 저신용소상공인자금', '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'을 지원받고 1년 후 신용점수(NCB 기준)가 70점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

## □ 대환대상 채무

- '25.6.30. 이전에 받은 대출(사업자대출, 사업용도 가계대출) 중에서 고금리 대출이거나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대출

## - (고금리) 은행·비은행권의 7% 이상 대출

\* 은행권: 하나, 신한, 국민, 우리, SC제일, 한국씨티, 경남, 광주, 아이엠(대구), 부산, 전북, 제주, 농협, 수협, 기업, 산업, 수출입, 케이, 카카오, 토스

\*\* 비은행권: 저축은행, 여신금융전문회사, 상호금융(신협, 지역농협, 지역수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), 보험사

## - (만기연장 애로) 은행권\*의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

\* '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' 발급 협조가 가능한 대리대출 취급은행(15곳): 하나, 신한, 국민, 우리, SC제일, 경남, 광주, 아이엠(대구), 부산, 전북, 제주, 농협, 수협, 기업, 산업

□ 용자조건

- 대출금리 : 연 4.5% 고정금리
- 대출기간 : 10년 (2년 거치·8년분할상환 또는 10년 분할상환 중 택1)
- 대출한도 : 5천만원\*
  - \* '22년, '24~'26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, '22~'24년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,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
- 용자방식 :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

### □ 사업목적

- 재창업·채무조정 성실 이행·재도약 유망 소상공인 등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

### □ 용자규모 : 1,000억원 내외

### □ 신청대상

- (일반형) 재창업 준비단계, 재창업 초기단계, 채무조정 소상공인
  - (재창업 준비단계)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\*을 수료한 소상공인
- \* 재창업교육(25h 이상): 금융·재무·세무 등 분야별 전문교육
- (재창업 초기단계)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

#### 1.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창업 소상공인

-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(이사)가 폐업기업의 대표(이사)에 해당
-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
-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\* 단,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

#### 2.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, 업종전환(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)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

- \*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(매출액 과반수)이 되는 경우도 인정

#### - (채무조정)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

#### 1.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\*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\*\*

- \* 참여기관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(<https://www.sbiz.or.kr>)를 통해 별도 공지

- \*\*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하고,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(20h 이상)을 수료한 소상공인

#### 2.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소상공인

#### 3. '24년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을 지원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소상공인

- (희망형) '25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기사업화를 완료하거나 '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한 소상공인\*  
\* 단, 채무조정 중인 경우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
- (도약형) 재창업(업력 2년 이상) 후 성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

구분	내용
재창업 (1개 이상 충족)	1. 재창업 기업의 업력이 2년 이상이고,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-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(이사)가 폐업기업의 대표(이사)에 해당 -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-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* 단,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2.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, 업종전환(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)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*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(매출액 과반수)이 되는 경우도 인정
성장 (1개 이상 충족)	1. 전년 대비 또는 최근 2분기 이상 매출액이 5%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2.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소상공인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2인 이상인 소상공인
성실상환	• 직접대출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 이력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경우

□ 용자범위

-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
□ 용자조건

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(일반형) 정책자금 기준금리 + 1.6%p  
(희망형)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  
(도약형)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4%p

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
- 대출한도\* : (일반형) 7천만원  
(희망형) 1억원  
(도약형) 2억원

\*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잔액 합산

- 용자방식 :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

사업목적

-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·경제적 자립 도모

 용자규모 : 500억원 내외 신청대상

- 장애인복지카드(국가유공자 카드(또는 증서))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

 용자범위

-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
 용자조건

- 대출금리(고정금리) : 연 2.0%
- 대출기간 : 7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- 대출한도 : 1억원\*
- \*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
- 용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

사업목적

-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

 용자규모 : 3,000억원 내외

 신청대상

-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

-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(만39세 이하)
-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청년 근로자(만39세 이하)인 소상공인
-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중인 소상공인

 용자범위

-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
 용자조건

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
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- 대출한도 : 7천만원\*

\* 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잔액 합산

- 용자방식 :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

## □ 사업목적

- 소공인, 성장 유망 소상공인, 민간의 투자·편당을 받은 소상공인 등에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

## □ 용자규모 : 7,920억원 내외

## □ 세부자금별 용자조건

자금명	지원대상	대출한도	대출금리	대출기간 (거치기간)
소공인 특화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일반) 업력 무관 소공인</li> <li>• (유망) 소공인특화지원 참여, 백년소공인 선정 소공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일반)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</li> <li>• (유망)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일반) 기준+0.6%p</li> <li>• (유망) 기준+0.4%p</li> </ul>	운전 5년 (2년) 시설 8년 (3년)
혁신성장 촉진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혁신형) 수출, 2년 연속 매출 10% 이상 신장, 스마트 공장 도입, 강한 소상공인·로컬크리에이터,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, 직접대출 성실상환</li> <li>• (일반형) 스마트기술, 백년가게, 사회 연대경제 조직,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혁신형)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</li> <li>• (일반형)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</li> </ul>	기준+0.4%p	운전 5년 (2년) 시설 8년 (3년)
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	민간 투자기관의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	최대 5억원	기준+0.4%p	8년 (3년 거치)
상생성장 지원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일반형) TOPS 프로그램 1단계에 선정된 소상공인</li> <li>• (성장형) ① TOPS 프로그램 2단계에 선정된 소상공인, ② 소진공과 상생협약을 맺은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 소상공인</li> <li>• (도약형) Post-Tops 프로그램에 선정된 소상공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일반형) 운전 7천만원</li> <li>• (성장형)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</li> <li>• (도약형)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</li> </ul>	기준+0.4%p	운전 5년 (2년) 시설 8년 (3년)

사업목적

-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

용자규모 : 2,000억원 내외

신청대상

\* 소공인 :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'C'로 시작하는 제조업

- (일반) 업력 무관 제조업 영위 소공인
- (유망) 소공인특화지원 참여 소공인,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소공인

구 분	내 용
소공인특화지원	'25년~'26년 소진공 스마트제조지원사업, 소공인판로개척지원사업, 소공인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중 1개 이상에 참여한 소공인
백년소공인	최근 5년(유효기간) 이내 소진공 백년소상공인(백년소공인) 육성사업에 선정된 소공인

용자범위

-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- 시설자금 : 기계·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
## □ 용자조건

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(일반)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  
(유망)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4%p
- 대출기간 : 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  
시설자금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
- 대출한도 : (일반) 연간 운전자금 1억원, 시설자금 5억원  
(유망) 연간 운전자금 2억원, 시설자금 10억원
- 용자방식 : (일반)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
(유망)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

### □ 사업목적

-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

### □ 용자규모 : 4,800억원 내외

### □ 신청대상

- **(혁신형)** 수출 소상공인, 2년 연속 매출 10% 이상 신장, 스마트공장 도입 소상공인, 강한소상공인·로컬크리에이터,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\*,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\*\*

\*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으로 성장 시 대출금리 0.4%p 인하하고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연계 지원

#### \*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이란?

- 평균매출액이 소기업(업종별) 매출 기준의 30% 이상이면서,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상한보다 최대 2명이 적은 소상공인
- (예시) 숙박 및 음식점업
  - 소기업 매출 기준: 평균매출액 15억원 이하
  -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기준: 5명 미만
  - 평균매출액 4억 5천만원 이상 15억원 이하, 상시근로자수 3명 이상 5명 미만인 경우 해당

\*\* 직접대출 성실상환 요건 :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경우

- **(일반형)** 스마트기술, 백년가게, 사회연대경제 조직,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

### □ 용자범위

-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- 시설자금 : 기계·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
## □ 용자조건

○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4%p

\*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 진입 시 대출금리 0.4%p 인하

○ 대출기간 : 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

시설자금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

○ 대출한도 : (혁신형) 연간 운전자금 2억원, 연간 시설자금 10억원

(일반형) 연간 운전자금 1억원, 연간 시설자금 5억원

○ 용자방식 :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

사업목적

-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·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골목 벤처기업으로 육성

 융자규모 : 360억원 내외 신청대상
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

 융자범위

-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- 시설자금 : 기계·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
 융자조건

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4%p
- 대출기간 :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
- 대출한도 : 연간 민간투자금 5배와 5억원 중 낮은 금액
- 융자방식 :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

### □ 사업목적

- 정책자금과 플랫폼의 상생지원을 결합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기반 성장 지원 및 시장 경쟁력 강화

### □ 용자규모 : 760억원 내외

### □ 신청대상

- (일반형) '25~'26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「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(TOPS프로그램)」 1단계 선정 소상공인
- (성장형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사의 추천을 받은 성장 소상공인\*, '25~'26년 TOPS 2단계 선정 소상공인
  - \* 「'26년 상생성장지원자금 상생협약」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사가 내부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기업 리스트를 통해 지원대상 확인
- (도약형) '26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「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도약사업(POST-TOPS)」 선정 소상공인

### □ 용자범위

-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- 시설자금 : 기계·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
### □ 용자조건

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4%p
- 대출기간 : 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  
시설자금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
- 대출한도 : (일반형) 연간 운전자금 7천만원  
(성장형) 연간 운전자금 1억원, 연간 시설자금 5억원  
(도약형) 연간 운전자금 2억원, 연간 시설자금 10억원
- 용자방식 :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

<별표 1>

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희주점업
56212	무도유희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·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익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
표준산업분류	업종
75330 중	홍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“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”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

1.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2. “관광진흥법”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 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희주점업(56211) 및 무도유희주점업(56212)
3. 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 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<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>

재해피해 소상공인	융자허용 업종
공통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관광특구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희주점업(56211), 무도유희주점업(56212)
특별재난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 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<별표 2>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

지역본부 및 센터	전화(FAX)	주소	관할구역
<b>서울지역본부</b>	<b>(02)730-9361 (02)730-9364</b>	<b>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, 태영대시앙루브 7층</b>	-
(서울)중부센터	(02)720-4711 (02)730-9360	서울 종로구 삼봉로 95,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	중구, 종로구, 서대문구, 은평구
(서울)동부센터	(02)2215-0981 (02)2215-0984	서울 광진구 자양로 142, 청양빌딩 4층	광진구, 성동구, 강동구, 동대문 구
(서울)서부센터	(02)839-8311 (02)839-8730	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3, 목동비즈타워 604호	강서구, 양천구, 영등포구
(서울)남부센터	(02)585-8622 (02)585-8626	서울 서초구 방배로 114, 다이치빌딩 3층	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
(서울)북부센터	(02)990-9101 (02)990-9104	서울 강북구 도봉로 186, 제이슨빌딩 5층	강북구, 성북구, 노원구, 도봉구, 중랑구
(서울)동작센터	(02)3482-6686 (02)3482-6687	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09, 406호	동작구, 용산구, 마포구
(서울)관악센터	(02)889-9262 (02)889-9270	서울 관악구 신원로 35, 삼모더프라임타워 8층	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
<b>부산울산지역본부</b>	<b>(051)469-4680 (051)442-1666</b>	<b>부산 중구 중앙대로 63, 부산우체국 12층</b>	-
(부산)중부센터	(051)469-1644 (051)469-3286	부산 중구 중앙대로 63, 부산우체국 12층	중구, 영도구, 서구, 사하구, 동구
(부산)북부센터	(051)341-8052 (051)342-8175	부산 북구 기찰로 12, 이수타워 9층	북구, 사상구, 강서구
(부산)남부센터	(051)633-6562 (051)633-0675	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, 프라임시티 6층	부산진구, 연제구, 동래구, 금정 구
(부산)동부센터	(051)761-2561 (051)761-2564	부산 수영구 과정로 46, SMC 빌딩 6층	남구, 수영구, 해운대구, 기장군
(울산)남부센터	(052)260-6388 (052)260-2472	울산 남구 북부순환도로 17, 남운프라자 1802호	남구, 울주군
(울산)북부센터	(052)243-7489 (052)243-7495	울산 중구 새즈문해거리 28, 2층	북구, 중구, 동구(남구, 울주군)
<b>대구경북지역본부</b>	<b>(053)629-4633 (053)628-4314</b>	<b>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, 우리은행(동산동지점) 3층</b>	-
(대구)남부센터	(053)629-4200 (053)628-4314	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, 우리은행 (동산동지점) 3층	서구, 중구, 남구, 수성구
(대구)북부센터	(053)341-1500 (053)341-3900	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, 리치프라자 2층	북구, 동구, 군위군
(대구)서부센터	(053)639-3404 (053)639-3411	대구 달서구 월배로 15길 8, 595b 4층	달서구, 달성군
(경북)안동센터	(054)854-3281 (054)854-3284	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, 백암빌딩 6층	안동시, 상주시, 의성군, 청송군, 영양군

지역본부 및 센터	전화(FAX)	주소	관할구역
(경북)구미센터	(054)475-5682 (054)475-5681	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-27, 구미시중 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	구미시, 김천시, 성주군, 칠곡군, 고령군
(경북)포항센터	(054)231-4363 (054)231-4364	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, 신한은 행 4층	포항시, 영덕군, 울진군, 울릉군
(경북)경주센터	(054)776-8343 (054)776-8346	경북 경주시 중앙로 67-2, 경주상공회의소 2층	경주시, 경산시, 영천시, 청도군
(경북)영주센터	(054)634-6975 (054)634-6980	경북 영주시 중앙로 7, 영주공유플랫폼 3층	영주시, 문경시, 봉화군, 예천군
<b>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</b>	<b>(062)369-8754 (062)369-8760</b>	<b>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, KDB생명빌딩 21층</b>	-
(광주)남부센터	(062)366-2122 (062)366-2136	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, KDB생명빌딩 21층	서구,남구
(광주)북부센터	(062)525-2724 (062)525-2726	광주 북구 동문대로 193, 동광주빌딩 2층	동구,북구
(광주)서부센터	(062)954-2084 (062)954-2085	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, 광주경 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7층	광산구
(전남)목포센터	(061)285-6347 (061)285-6349	전남 무안군 삼함읍 오룡3길 2, 전남중소 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5층	목포시, 무안군, 해남군, 강진군, 영암군, 장흥군, 신안군, 완도군, 진도군
(전남)순천센터	(061)741-4153 (061)741-4159	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, 5층	순천시, 광양시, 구례군, 보성군, 고흥군, 곡성군
(전남)여수센터	(061)665-3600 (061)665-3607	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962-12, 여수상공 회의소 3층	여수시
(전남)나주센터	(061)332-5302 (061)332-5309	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, 비전타워 306호	나주시, 화순군, 함평군, 영광군, 장성군, 담양군
(제주)제주센터	(064)751-2101 (064)751-2103	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,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	제주시
(제주)서귀포센터	(064)739-9215 (064)739-9218	제주 서귀포시 신중로 50, KT신서귀포빌딩 1층	서귀포시
<b>경기남부지역본부</b>	<b>(031)204-3012 (031)204-3021</b>	<b>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, 경기지방중소기업청 4층</b>	-
(경기)수원센터	(031)244-5161 (031)244-5123	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, 경기지방 중소기업청 1층	수원시
(경기)평택센터	(031)666-0260 (031)666-0270	경기 평택시 중앙로 31,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	평택시
(경기)화성센터	(031)8015-5301 (031)8015-5304	경기 화성시 병점1로 218, 씨네샤르망 B동 303호	화성시, 오산시
(경기)성남센터	(031)705-7341 (031)707-7345	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, 우리 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4층	성남시
(경기)안양센터	(031)383-1002 (031)383-0550	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, 신한 은행 평촌역금융센터 3층	안양시, 군포시, 의왕시, 과천시
(경기)안산센터	(031)482-2590 (031)482-2593	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, 안산 우체국 1층	안산시
(경기)하남센터	(031)794-4383 (031)794-4390	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, 미사강변블 루 6층	하남시, 광주시, 양평군
(경기)용인센터	(031)337-1830 (031)337-1838	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, 용인타워 303호	용인시
(경기)안성센터	(031)677-6199 (031)677-6188	경기 안성시 비룡5길 30,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~203호	안성시
(경기)이천센터	(031)631-7455 (031)631-7465	경기 이천시 부악로 8, 행정A센터 302호	이천시, 여주시

지역본부 및 센터	전화(FAX)	주소	관할구역
<b>경기북부지역본부</b> *의정부센터	<b>(031)876-4384</b> <b>(031)876-4386</b>	<b>경기 의정부시 행복로 39,</b> <b>KB국민은행 의정부중앙종합금융센터 4층</b>	<b>의정부시, 동두천시, 포천시,</b> <b>양주시, 연천군</b>
(경기)광명센터	(02)2066-6348 (02)2066-6347	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, 송화빌딩 6층 601호	광명시
(경기)부천센터	(032)655-0381 (032)655-0383	경기 부천시 길주로 433, 네스필러타워 2층	부천시
(경기)고양센터	(031)925-4266 (031)925-4269	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, 보림빌딩 604호	고양시, 파주시
(경기)시흥센터	(031)311-2689 (031)311-2690	경기 시흥시 은계로 347, 다운프라자 4층 403호	시흥시
(경기)김포센터	(031)997-4302 (031)997-4305	경기 김포시 돌문로49, 원정빌딩 4층	김포시
(경기)구리센터	(031)554-5361 (031)554-5370	경기 구리시 건원대로44, 태영빌딩 502호	구리시, 남양주시, 가평군
<b>인천지역본부</b>	<b>(032)822-2619</b> <b>(032)822-2620</b>	<b>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,</b> <b>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713호</b>	-
(인천)남부센터	(032)437-3570 (032)437-3574	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, 삼원빌딩 2층	연수구, 미추홀구, 남동구, 중구, 동구, 옹진군
(인천)북부센터	(032)514-4010 (032)514-4014	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, 신한은행 5층	부평구, 계양구, 서구, 강화군
<b>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</b>	<b>(042)864-1609</b> <b>(042)864-1623</b>	<b>대전 중구 계룡로 800,</b> <b>동아생명빌딩 9층</b>	-
(대전)남부센터	(042)223-5301 (042)223-0665	대전 중구 계룡로 800, 동아생명빌딩 1층	중구, 동구
(대전)북부센터	(042)864-1602 (042)864-1606	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, 102호	유성구, 서구, 대덕구
(세종)세종센터	(044)868-4524 (044)868-4527	세종 한누리대로 2150, 스마트허브1 3층 303호	세종시
(충남)천안센터	(041)567-5302 (041)567-5308	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,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	천안시
(충남)공주센터	(041)852-1183 (041)852-1186	충남 공주시 무령로 204, 금성빌딩 3층	공주시, 홍성군, 청양군
(충남)논산센터	(041)733-5064 (041)733-5067	충남 논산시 중앙로 464, 논산타워 2층	논산시, 계룡시, 금산군
(충남)서산센터	(041)663-4981 (041)663-4980	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, 서산시2청사 2동 2층	서산시, 당진시, 태안군
(충남)아산센터	(041)549-5392 (041)549-5399	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, 삼영프라 자 202호	아산시, 예산군
(충남)보령센터	(041)931-4443 (041)931-4448	충남 보령시 흥덕로 22, 2층	보령시, 서천군, 부여군

지역본부 및 센터	전화(FAX)	주소	관할구역
<b>강원지역본부</b> *춘천센터	<b>(033)243-1950</b> <b>(033)244-9164</b>	<b>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,</b> <b>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</b>	<b>춘천시, 홍천군, 양구군,</b> <b>화천군, 철원군</b>
(강원)강릉센터	(033)645-1950 (033)645-3695	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, 대한상공회 의소 3층	강릉시, 평창군
(강원)원주센터	(033)746-1950 (033)746-1990	강원 원주시 호저로 47, 강원특별자치도경 제진흥원 3층 306호	원주시, 횡성군, 영월군
(강원)삼척센터	(033)575-1950 (033)575-1953	강원 삼척시 중앙로 296, 삼척시청 별관 1층	삼척시, 동해시, 태백시, 정선군
(강원)속초센터	(033)638-1950 (033)638-1951	강원 속초시 중앙로 183,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	속초시, 양양군, 고성군, 인제군
<b>충북지역본부</b> *청주센터	<b>(043)234-1095</b> <b>(043)234-1091</b>	<b>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,</b> <b>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</b>	<b>청주시, 보은군</b>
(충북)충주센터	(043)854-3616 (043)854-3619	충북 충주시 으뜸로 21, 충주시청 11층	충주시
(충북)제천센터	(043)652-1781 (043)652-1784	충북 제천시 풍양로 65, KT제천빌딩 2층	제천시, 단양군
(충북)음성센터	(043)873-1811 (043)873-1814	충북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3, 미르타워 3층	음성군, 괴산군, 증평군, 진천군
(충북)옥천센터	(043)731-0924 (043)731-0926	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15, 옥천읍사무 소 3층	옥천군, 영동군
<b>전북지역본부</b> *전주센터	<b>(063)231-8110</b> <b>(063)231-8112</b>	<b>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,</b> <b>전주상공회의소 6층</b>	<b>전주시, 완주군, 진안군, 무주군</b>
(전북)익산센터	(063)853-4411 (063)853-4413	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, 익산상공회의소 3층	익산시
(전북)정읍센터	(063)533-1781 (063)533-1783	전북 정읍시 중앙로 72, 기업은행 3층	정읍시, 김제시, 고창군, 부안군
(전북)군산센터	(063)445-6317 (063)466-0199	전북 군산시 대학로 600,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연구숙박동 3층	군산시
(전북)남원센터	(063)626-0371 (063)626-0372	전북 남원시 향단로 83, KT남원빌딩 1층	남원시, 장수군, 임실군, 순창군
<b>경남지역본부</b> *창원센터	<b>(055)275-3261</b> <b>(055)275-3264</b>	<b>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0,</b> <b>오션타워 5층(502호, 503호)</b>	<b>창원시(구 마산시, 진해시),</b> <b>창녕군, 함안군</b>
(경남)진주센터	(055)758-6701 (055)758-7102	경남 진주시 충의로 26,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	진주시, 사천시, 산청군, 의령군 남해군, 하동군, 거창군, 함양군, 합 천군
(경남)김해센터	(055)323-4960 (055)323-4963	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, 김해상공회의소 1층	김해시
(경남)통영센터	(055)648-2107 (055)648-2109	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, 농협은행(한려지점) 3층	통영시, 거제시, 고성군
(경남)양산센터	(055)367-7112 (055)367-7116	경남 양산시 중앙로 33-2, 양산비즈니스센 터 4층	양산시, 밀양시

<별표 3>

신용보증서 발급기관

- 지역신용보증재단 : 1588-7365
- 신용보증기금 : 1588-6565
- 기술보증기금 : 1544-1120

<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>

재단명	전화번호	홈페이지
강원재단	(033) 260-0001	<a href="http://www.gwsinbo.or.kr">www.gwsinbo.or.kr</a>
경기재단	1577-5900	<a href="http://www.gcgf.or.kr">www.gcgf.or.kr</a>
경남재단	1644-2900	<a href="http://www.gnsinbo.or.kr">www.gnsinbo.or.kr</a>
경북재단	1588-7679	<a href="http://www.gbsinbo.co.kr">www.gbsinbo.co.kr</a>
광주재단	(062) 950-0011	<a href="http://www.gjsinbo.or.kr">www.gjsinbo.or.kr</a>
대구재단	(053) 560-6300	<a href="http://www.dgsinbo.or.kr">www.dgsinbo.or.kr</a>
대전재단	(042) 380-3800	<a href="http://www.sinbo.or.kr">www.sinbo.or.kr</a>
부산재단	(051) 860-6600	<a href="http://www.busansinbo.or.kr">www.busansinbo.or.kr</a>
서울재단	1577-6119	<a href="http://www.seoulshinbo.co.kr">www.seoulshinbo.co.kr</a>
세종재단	(044) 865-0550	<a href="http://www.sjsinbo.or.kr">www.sjsinbo.or.kr</a>
울산재단	(052) 289-2300	<a href="http://www.ulsanshinbo.co.kr">www.ulsanshinbo.co.kr</a>
인천재단	1577-3790	<a href="http://www.icsinbo.or.kr">www.icsinbo.or.kr</a>
전남재단	(061) 729-0600	<a href="http://www.jnsinbo.or.kr">www.jnsinbo.or.kr</a>
전북재단	1588-3833	<a href="http://www.jbcredit.or.kr">www.jbcredit.or.kr</a>
제주재단	(064) 750-4800	<a href="http://www.jcgf.or.kr">www.jcgf.or.kr</a>
충남재단	1588-7310	<a href="http://www.cnsinbo.co.kr">www.cnsinbo.co.kr</a>
충북재단	(043) 249-5700	<a href="http://www.cbsinbo.or.kr">www.cbsinbo.or.kr</a>

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(불법 브로커)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!

- 제3자(불법 브로커)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·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.

#### 부당개입 주요유형

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	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,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
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	재무제표 분식,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
③ 허위 대출 약속	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(요건 미흡 등)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
④ 정부기관 등 사칭	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
⑤ 부정청탁	정부,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,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
⑥ 계약불이행	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,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

-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,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또한 정부,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

#### <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> (기관별 작성 필요)

- (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) <https://ols.semas.or.kr>
- (콜센터) 1533-0100
- (현장접수) 전국 12개 지역본부 및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